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3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조경태·윤주경·홍문표

박완수 · 김영식 · 안병길

추경호 · 태영호 · 이종배

윤재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보 행자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많으나, 현행법상 '도로'가 아니기 때 문에 이 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 되며,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.

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 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도로"를 "도로(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이 조 및 제156조에서 같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	제17조(자동차등의 속도) ①
속도)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	
의 <u>도로</u>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	<u>도로(「주택법」에</u>
부령으로 정한다.	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사람
	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
	공개된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
	이 조 및 제156조에서 같다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